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 12. 18.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2025년 11월 7일
- 나. 발의자: 이규선 의원 외 9명
- 다. 회부일자: 2025년 11월 17일
- 라. 상정일자: 제266회 영등포구의회 2025년도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5. 11.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규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지원대상 (안 제5조)
- 지원내용(안 제6조)
- 임산부의 날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안은 임산부·태아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총 9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내용

- 안 제1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안 제9조

까지는 임산부의 날, 교육 및 홍보, 시행규칙 관련 규정으로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음.

○ 검토결과

-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 보호 및 출산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등록관리, 임신·출산 인식 개선 홍보 등 예방 중심 정책을 규정하여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 유도, 지역사회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안 제6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신축하지원금은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으로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목적의 사업으로 타 지자체의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음.

【임신축하 지원금 지원 현황】

지자체명	제공유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현금지급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경기도 과천시	지역화폐
경기도 김포시	현금지급
경기도 군포시	현금지급
경기도 양주시	현금지급
충청남도 청양군	현금지급, 현물지급
경상남도 진주시	지역화폐
무주군	현금지급, 현물지급
부산광역시 중구	현금지급

※ 출처: 보건복지부 복지로 검색 결과

- 임신축하 지원금은 사회보장급여 성격의 금전 지급 규정이므로 「사회보장기본법」 제 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신규 사회보장제도 협의 절차가 필요하며, 구체적인 세부 지원 사항(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서 별도로 정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현재 우리 구(區)에서는 임산부를 포함한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본 제정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 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출산과 상관없이 임신만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차별점을 가지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산 이후(신생아, 가족) 중심이었다면 본 제정 조례안은 출산 이전(임산부, 태아) 중심으로 규정하여 생애주기 전체 단계로 정책 영역을 확장하여 정책 공백을 해소하는 데에 의의가 있음.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38
------------	-----

발의연월일: 2025. 11. .
발 의 자: 이규선 · 정선희 · 양송이
최봉희 · 신흥식 · 최인순
우경란 · 임현호 · 이성수
이순우 의원 (10인)

1. 제안이유

최근 저출산과 인구감소는 단순한 인구통계적 현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대한 사회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신체적·정신적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본 조례안은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정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구민 누구나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아울러 임신축하 지원금, 임산부 태교 프로그램 및 인식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확산시키고, 출산이 개인의 부담이 아닌 지역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문화로 정착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제2조)
- 나. 구청장의 책무 (안 제3조)
- 다. 지원대상 (안 제5조)
- 라. 지원내용(안 제6조)
- 마. 임산부의 날 (안 제7조)

3. 제정안: “별첨”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따라 저출산과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대응하고 구민의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
2. “태아”란 수정된 후 태어나기 전의 아이를 말한다.
3. “임신축하 지원금”이란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4. “영등포사랑상품권”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영등포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특히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임산부와 태아에 대한 지원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모두의 문제로 인식하고 극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률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임산부 및 태아 지원에 관하여 법률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로 한다.

②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결혼이민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으로 제1항을 적용한다.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신축하 지원금

2. 임산부 등록관리 등 건강지원

3.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사업

4. 임산부 모임 구성 및 지원

5. 그밖에 건강한 임신 및 출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신확인이 가능한 서류와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개인정보 조회에 동의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등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임신 16주 이상 임산부로 하며, 임신축하 지원금은 영등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임산부의 날) 구청장은 「모자보건법」 제3조의2에 따른 임산부의 날에 임신과 출산의 중요성을 북돋우기 위한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 등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